
이해충돌 관리체계 구축(안) 보고

2017. 10.



한국지역난방공사

감 사 실

1 개요

□ (추진배경) 중장기 감사전략에 맞춘 반부패 관리시스템 도입 및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반영

○ (중장기 감사전략) ‘청렴윤리경영체계의 전문 컨설팅 파트너’로서 부패척결을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노력

○ (청렴시민감사관 권고*) 반부패시책 추진 우수기관으로서 「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」의 선제적 도입 권고

* '17년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회의('17.4.27)

□ (도입 필요성) 新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임직원의 이해충돌관리체계 구축 필요 확인

○ (新정부 국정과제) ‘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’ 추진에 대한 적극적 대응

○ (기관현황) 이해충돌위험 노출 및 관리실태 현황 진단* 결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

- 이해충돌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, 현재 통제활동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응체계 수립 필요

*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시행('17.8.7~8.15)

[이해충돌 위험 노출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진단결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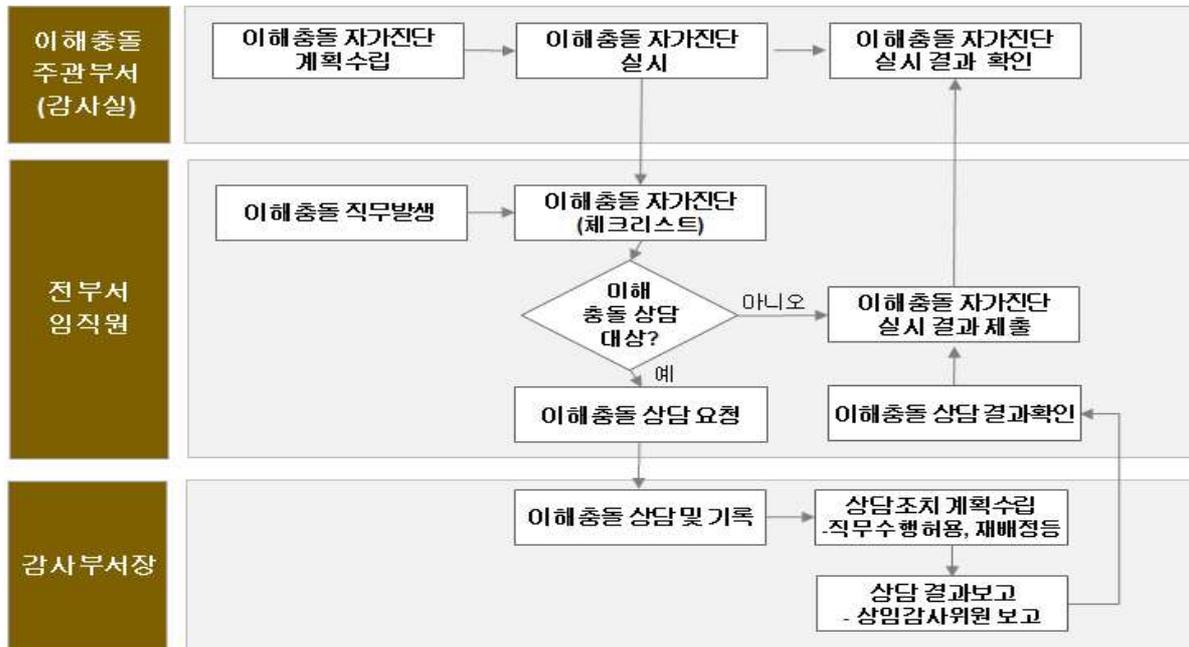
구분		진단결과
이해충돌 위험 노출현황	이해충돌 인식도	응답자의 28%(100명)가 이해충돌 행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
	발생위험 유형	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업무수행이 가장 발생위험이 큰 유형으로 도출
	행위목적 유무	실제 현장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필요인식
관리운영 실태	통제 환경 통제활동	응답자의 67%(238명)가 이해충돌행위 방지 활동을 위한 감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
	위험인식 및 평가	응답자의 30%(107명)가 이해충돌 발생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절차, 체계 수립이 미흡하다고 인식
	의사소통 모니터링	이해충돌 관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필요 및 예방활동을 위한 IT시스템 개선이 요구됨

* 전체 응답자 : 356명(응답자 중 53.9%는 3년차 이하 신입직원)

2 이해충돌 관리체계 도입(안)

- (정의)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, 임직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- (유형) 잠재적 충돌과 실제 이해충돌로 구분
 - (잠재적 충돌)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영업, 계약, 고객설비, 열수송 관련 직무수행에서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5개 유형 분류*
 - * 이해충돌관리기준 제3조 2호 참조
 - (실제 이해충돌) 이해충돌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충돌
 - 수행 직무로 인해 부당하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전 등 재물을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14개 유형*
 - * 이해충돌관리기준 제3조 3호 참조
- (관리범위)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대상 원칙이나,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까지 대상확대 가능
- (리스크관리) 감사부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업무의 공정성 저해 또는 부패행위가 발생함으로써 공사의 청렴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

□ (이해충돌 진단 및 관리체계) 이해충돌 발생 사전예방 중점



○ (자가진단 체크리스트) 이해충돌 여부 진단 및 상담을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

- 직무성격, 직무관련자 진단 등 4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

○ (이해충돌 확인)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이해충돌 확인



○ (이해충돌 상담) 임직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감사부서의 장과 상담을 통하여 파악

- (상담요건)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진단결과 “예”라고 응답한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

- (절차) 임직원이 제출한 상담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파악

- (관리조치) 상담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, 일시적 직무 재배정, 중립적인 제3자 직무수행 위임, 인력 재배치 등 권고
- (모니터링) 이해충돌 상황 발생여부 정기적 확인 및 조치, 모니터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재발방지 관리
- (자가점검) 이해충돌 위험 확인을 위한 각 부서 자가진단 실시요청 가능
- (이해충돌관리기준 제정) '이해충돌'에 대한 정의 및 관리절차 등 체계적으로 관리

3 향후 추진계획

- (기준제정) 이해충돌관리기준 제정(10월)
- (취약분야별 시스템 적용)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전자계약 시스템 적용(10월)
- (취약분야 자가점검 시행) 계약, 고객설비, 열수송, 인사, 예산분야 등 자가점검 시행(10월)